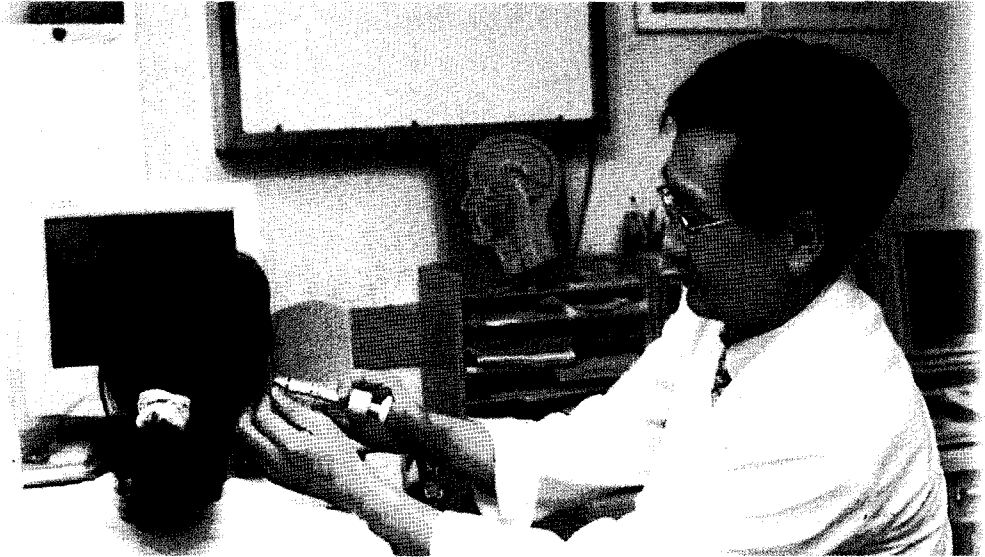




현 의료서비스 어디까지?



설명 부족으로 일어나는 의료 분쟁을 줄이려면

병원측에서 주의해야 할 일

- * 의사는 수술에 국한하지 않고 진찰·검사·진단·치료등의 모든 진료단계에서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 스스로가 의료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 문서화된 수술동의서 외에 환자 각자의 질환에 맞춰 설명한다.
- * 환자에 대한 설명 날짜·시간·장소·내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한 대상에게 확인받아 두면 분쟁이 일어날 때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 * 간호사는 의사설명이 미흡할 때 환자에게 보충설명을 해주도록 한다.
- * 설명대상은 환자 본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친권자·후견인에게 설명한다.

환자측에서 주의해야 할 일

- * 환자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므로 자신의 질병에 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유의사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락한다.
- * 의사가 사용하는 의학용어가 난해해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쉬운 용어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한다.
- * 치료에 대한 설명과 질문의 답변은 기록해 두고 본인의 질병상태변화 등을 의사에게 전달해 진료행위에 협조한다.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으로 시력 악화

박모 씨(남, 45세)는 우안 백내장 수술 이틀 후 삽입된 인공 수정체가 고정되지 않아 다시 고정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 염증이 발생해 상급 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으나 교정시력이 저하되고 비문증이 발생했다.

박씨는 수술후 인공 수정체를 재고정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담당의사는 수술후 위생관리를 잘못해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처리결과는 이랬다

안내염의 정확한 원인은 감염통로가 다양하므로 입증하기 힘들다.

수술후 매일 통원치료를 하고 안대를 부착한 상황을 고려하면 수정체를 재고정할 때 염증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수술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배상키로 합의됐다.

팔목의 부적절한 치료로 관절 장애 발생

권모 씨(여, 36세)는 팔목을 다쳐 단순방사선촬영을 한 다음 부목(깁스)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됐다. 7주후 깁스를 풀고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권씨는 다른 방사선과에서 사진을 촬영한 결과 뼈가 뒤틀려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수술을 받았으나 관절장애가 발생했다. 권씨는 지속적인 통증호소를 담당의사가 무시하고 일시적인 통증치료만 해 수술기회를 놓침으로써 장애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처리결과는 이랬다

환자의 통증이 계속 진행됨에도 상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사선촬영 등)를 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과 환자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배상키로 합의됐다. >>>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시연을 기다립니다.

각 병원에서 겪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물론 당뇨인에게 소개해 널리 알리고 싶은 병원이 있으시다면 추천도 가능합니다.

시연을 보내주실 때에는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사무국 (02-2297-854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01-3 동신빌딩 5층 편집부